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56

발의연월일: 2020. 9. 14.

발 의 자:이용우・유동수・홍성국

송영길 • 이병훈 • 홍정민

박홍근 • 윤준병 • 강준현

신정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에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 정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급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조정안 결정통지 전 단계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를 악용하여 시간적·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대리점에게 조정 취하를 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대리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2호 중 "조정의 신청 전후에 분쟁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를 "조정의"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소송과의 관계) ①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 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조정 등) ① ~ ③ (생	제20조(조정 등)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	4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정의 신청 전후에 분쟁당	2. <u>조정의</u>
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	
였거나 조정의 신청 후에 분	
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	
라 중재신청을 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20조의2(소송과의 관계) ① 조
	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
	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
	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
	<u></u> 할 수 있다 <u>.</u>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
	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

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 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 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 차를 중지할 수 있다.